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손해사정 관련 업무 종사 경력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한편, 손해평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1차 시험 과목에 작물학 과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재해보험사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을 금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그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상법」 보험편
- 나. 농학개론 중 재배학, 가축사양학
- 다. 작물학개론(식량작물학, 원예작물학을 말한다)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해당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을 하지 아니하며,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5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5(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의 일부 면제) ① 법 제11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의5(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의 일부 면제) ① ----- ----- -----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 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 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 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 는 사람	1. ----- ----- 5 년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 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 ----- 5 년 -----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립된 금융감독원	<삭 제>
나. ~ 바. (생략)	가. ~ 마. (현행 나목부터 바 목까지와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표2의2]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의 과목(제12조의4 관련)	[별표2의2]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의 과목(제12조의4 관련)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1728